

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

우리 지청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, 의견진술서 및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06. 09.

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, 의견진술서 및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: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,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 (사업장명)	주소	현장명		과태료 부과예정액	송달 불능 사유	공시송달내용
			미납공제부금				
1	박0규 ((주)도준건설)	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5-1 2층	안강 노당, 산대지구 하수관로 정미사업(총괄분)	2,000,000원 (자진납부시 1,600,000원)	폐문부재	과태료 시선통지 의견 진술	
2	박0규 ((주)도준건설)	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5-1 2층	안강 노당, 산대지구 하수관로 정미사업(총괄분)	2025년 12월 공제부금 4,862,000원 2026년 1월 공제부금 2,210,000	-	폐문부재	시정지시

4. 광고기간: 2026.06.09. ~ 2026.06.23.(15일간)

5.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1층 노동기준조사2과 박예린(TEL. 054-271-68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